

北韓의 勞動生産性과 適正賃金： 北韓勞動力の 質에 관한 考察

曹 東 昊

일반적으로 北韓의 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北韓의 勞動力에 南韓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推進되어 왔으며, 北韓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勞動力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體系的인 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本 研究에서는 北韓의 勞動力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妥當性을 北韓 勞動力의 教育水準, 作業規律, 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教育수준이나 作業규율에 근거하여 北韓의 勞動力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本 研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北韓의 平均的인 勞動力의 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勞動力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北韓의 勞動力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對北投資事業의 보다 慎重한 檢討 및 對北投資事業時 보다 效率的인 北韓 勞動力의 活用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言

비록 최근 北韓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를 검토하여 주신 本院의 李永燮, 李周浩 박사께 감사드리며, 중간단계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論評과 아이디어를 주신 金俊逸, 文宇植, 白雄基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論評은 本稿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筆者는 本 研究를 통하여 本院의 長點이

및 그로 인한 핵사찰문제 등으로 남북경제 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1992년까지는 남북경제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7월 7일 大統領의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特別宣言(이하 7·7특별선언)’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로 규정한 우리 정부는 이전까지의 적대적인 대결구도로부터 相互繁榮

을 위한 共存構圖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하였다.¹⁾ 이 ‘7·7특별선언’에서는 남한과 북한주민의 상호교류·방문 및 남북한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비롯한 6개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으며,²⁾ 그후 정부는 ‘7·7특별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後續措置를 발표하였다.

1988년 7월 13일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개최 제의, 1988년 7월 15일 문교부의 남북교육당국회담 개최 제의, 1988년 7월 16일 외무부의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1988년 9월 3일

문공부의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발표, 1988년 10월 7일 경제기획원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 발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성명을 통해 발표된 對北韓 經濟開放措置는 남북한간의 交易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經濟共同體로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이후 남한과 북한간의 經濟關係定立의 기본방향이 되었으며, 남북한간의 經濟交流가 실질적으로 크게 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

이러한 우리 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크게 변모하였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특히 1992년은 남북경제관계가 크게 진전된 시기로서 남북경제관계의 미래가 매우 낙관적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1992년에 이루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 각종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설치, 북한 부총리의 남한방문,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관련 우리 대표단의 방북, 民·官으로 구성된 남포조사단의 파견 등은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變化된 南北關係를 반영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직 주로 間接交易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件의 直交易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교역의 규모에 있어서도 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여 1993년 11월 말 현재 總搬出入規模는 약 6억 4천만달러

研究分野의 多樣性 및 그로 인한 研究過程에서의 相互補完性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誤謬는 물론 筆者의 몫이다.

- 1) 1970년대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회담, 1980년대 중반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 경제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1970~80년대에도 남북관계를 선의의 경쟁구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화보다는 대결에 치우침으로써 “대화 있는 대결시대”를 전개하였다는 의미 이상의 의의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 2) ‘7·7특별선언’의 6개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북상호교류와 자유왕래, 둘째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 방문, 셋째 남북한 교육문호개방, 넷째 우방국의 북한교역 不反對, 다섯째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조, 여섯째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협조 등이다.
- 3) 이 對北韓 經濟개방조치의 내용은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북한원산지표시 상표부착 허용,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미부과,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방문 허용,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남북경제교류 관련법제 보완 등이다.

〈表 1〉 年度別 搬出入 規模(承認基準)

(단위 : 천달러)

	반 입	반 출
1988	1,037	-
1989	22,235	69
1990	20,354	4,731
1991	165,996	26,176
1992	200,685	12,818
1993	177,701	7,436
계	588,008	51,230

註 : 1993년은 11월까지의 액수임.

資料 : 統一院(1993a).

(승인기준)에 달하고 있다(表 1 참조). 이러한 南北交易의 規模는 1992년의 경우 북한 총교역규모의 8%(승인기준, 통관기준 6.5%)를 차지함으로써 남한은 북한의 5대 교역대상국의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交易과 함께 委託加工去來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991년 말부터 시작된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거래는 1991년에 2건 3만 3천달러, 1992년에 8건 44만달러, 1993년 11월말 현재 33건 351만달러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⁴⁾ 품목에 있어서도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봉제인형, 가방으로부터 최근에는 바지, 셔츠, 스웨터, 재킷 등 의류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크릴사 원료를 공급하고 아크릴사를 반입하는 위탁가공도 이루어지고 있다.⁵⁾

교역과 위탁가공거래의 활발한 진전과 더불어 對北投資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크게 고조되어 왔다. 아직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대북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기업들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2년 9월말까지의 統一院의 集計에 의하면 1989년에는 하나밖에 없던 투자계획기업이 1990년에는 4개, 1991년에는 33개로 늘어난 데 이어 1992년에는 9월말까지 66개사로 급증하였다.⁶⁾ 또한 「對北投資環境에 관한 企業人 意識調查結果」⁷⁾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72.8%가 投資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4) 統一院(1993c), p.8.

5)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20.

6) 『中央日報』(1992. 10. 31).

7) 統一院 교류협력국에서는 1992년 12월 5일부터 1993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접촉 또는 방북승인 신청업체와 남북교역 유경험업체 등 150개 기업에 대하여 대북투자계획, 분야, 형태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81개 기업이 설문에 응했으며, 설문결과는 「對北投資環境에 관한 企業人 意識調查結果」로 발표되었다.

중 30.5%는 3~7명 정도의 인력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고, 52.5%는 기존 유관 부서에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對北投資事業의 주요 골자는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에 남한의 資本과 技術을 결합시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 중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經濟的 思考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진행된 급속한 賃金上昇으로 價格競爭力을 상실해 가고 있던 기업들로서는 대북 진출이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產業構造調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게다가 低賃勞動力을 찾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였던 기업 중 많은 수가 문화적인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던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구비하였음은 물론 문화와 언어가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의 투자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대북투자가 市場先占 및 향후 橋頭堡 確保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

면 대북투자는 한층 더 매력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經濟難의 打開을 위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 유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外國人投資와 관련한 法律의 制定·改正 및 남한기업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 등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노동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의 經濟協力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經濟發展의 潛在力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經濟共同體 形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個別企業은 물론 政府次元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대북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北投資環境에 관한 企業人 意識調查結果」에 따르면 투자이유 중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이 전체의 35.8%로 가장 높으며, 한국무역협회(1991)의 조사결과⁸⁾에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이 31.7%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진출 교두보 확보”(41.5%)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진출 교두보 확보”가 단기적인 경제성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이 대북투자계획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991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동안 남북한교역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역 및 투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63개 업체가 설문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결과는 『南北韓 物資交易現況과 交易增進對策』이라는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大韓商工會議所(1992)의 조사결과⁹⁾에서도 북한의 투자여건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유의 첫번째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71.4%)을 꼽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¹⁰⁾ 賃金水準에 있

어서는 북한의 국내기업의 임금수준 및 외국인투자기업인 合營企業의 임금수준, 그리고 북한이 남포공단이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임금수준에 관해 발표한 자료들을 통하여 대략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나, 勞動의 質의 측면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임금수준의 경우,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대략 월 15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¹¹⁾ 이는 남한의 경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북한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¹²⁾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을 임금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다지 ‘저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북한 노동력의 질에 관하여 대부분의 신문·잡지의 기사나 논문들은 북한의 노동력은 ‘양질’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¹³⁾ 委託加工形式을 통하여 남한으로 반입된 製品의 品質을 통하여 북한 노동력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이를 근거로 북한 노동력의 질을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동원된 노동력이 평균적으로 우수한 숙련공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된 노동력의 수나 시간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노동력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

-
- 9) 大韓商工會議所는 1992년 6월 1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1992년 5월 현재 統一院으로부터 대북한 반출입승인을 얻은 전체기업(반출승인 9개 기업, 반입승인 128개 기업, 총 137개 기업)에 대하여 북한의 투자여건과 제약요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92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는 『南北韓 合作投資의 推進方案』으로 발표되었다.
- 10) 이에 관한 검토로는 全洪澤(1993)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역시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을 뿐 노동력의 질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언급이 없다.
- 11) 구체적인 설명에 관해서는 第V章의 논의를 참조.
- 12) 이들 국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지역, 조사시점, 임금 외의 추가부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자료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월평균 약 75달러, 베트남의 경우는 약 50달러,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약 60~80달러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 13) 1992년 10월초 북한을 방문하고 온 남포조사단은 “노동력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되었으나(『한겨레신문』, 1992. 10. 11), 판단의 근거나 북한노동력의 수준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는 교육수준을 근거로 든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71), 韓國經濟研究院(1993, p.74),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인터뷰 기사(『조선일보』, 1992. 1. 27) 및 작업규율을 근거로 든 韓國經濟研究院(1993, p.74)이 유일한 것인바, 그 내용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第III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면 양질의 노동력을 가정한 對北投資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對北投資의 모든 업종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동작업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비교적 短期間의 教育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生産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도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내의 상황,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 그리고 남북한간의 政治的 關係變化에 따르는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현재 남한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이미 현지의 勞動市場을 비롯한 각종 法·制度·慣行·文化가 잘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지역으로의 진출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南北 經濟關係의 梗塞과 그로 인한 投資의 保留는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대북투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북투자의 가장 큰 유인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향후 대북투자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대북투자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이냐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基本目的이 있다. 왜냐하면 ‘저렴’의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다지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리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勞動力이란 북한의 전체적인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特定業種의 노동력이나 特定技術階層의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양질’ 여부도 북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질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의 질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였을 때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는 노동력이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일 것이라고 예상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보다는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보다 높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본 연구는 실제 우리 기업이 사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본 연구는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의 질에 대

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외국기업에게 제공하게 될 노동력이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에 비해 우수한 것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열등한 노동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상 북한이 외국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 등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을 이동시켜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각 공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노동력을 내놓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第Ⅱ章에서는 북한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根據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한다. 그 근거들 중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하여 第Ⅲ章 이하의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第Ⅲ章에서는 우선 實證分析을 위한 모형과 資料들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第Ⅳ章에서는 第Ⅲ章에서 논의된 모형과 자료들을 이

용하여 북한의 平均勞動生産性 및 限界勞動生産性を 추정하고 남한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第Ⅴ章에서는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 노동력의 適正賃金水準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과의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노동력의 ‘양질’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北韓勞動力の 質에 관한 論議

북한 노동력이 ‘良質’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노동자들의 教育水準이 높다. 둘째, 作業規律(work discipline)이 잘 되어 있다. 셋째, 質 자체는 높지 않을지 몰라도 임금수준에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이유에 대하여 차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教育水準

교육수준에 의거하여 북한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북한 노동자의 교육정도나 교육이수기간 등이 남한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14) 1992년 11월 19일 필자와 면담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효동기업의 서진섭 사장에 의하면,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무교육기간이 11년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 질적으로 우수”(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71)하다거나, “북한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韓國經濟研究院(1993), p.74)한다거나, 혹은 “북한의 노동력은 모든 주민이 100%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우수”(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1992. 1. 27)하다는 견해 등이 그 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의 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정리하고 남한과 비교해 놓은 것이 <表 2>이다. <表 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표상으로는 南北韓勞動力間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지표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數値가 실제의 노동력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教育의 質이 문제가 된다. 북한은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智德體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 현재 북한 교육에 있어서 장기적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教育의 綜合指針書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사회주의 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 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서조차도 “어려서부터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¹⁶⁾

그 결과 우리의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의 교과내용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공산주의 도덕’, ‘특강’ 등이 전체 수업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중학교의 경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역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 ‘특강’ 등이 전체 수업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일반과목에서조차도 혁명교양, 전쟁의식고취 등 政治思想教育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한 예로 1985년도판 인민학교 국어교과서(1~4학년용)의 총 196개 단원 중 순수 국어교육과 관련된 단원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김일성 우상화 및 충성심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헌법) 제43조.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 제1조.

17) 문용린(1990), pp.404~406.

〈表 2〉 南北韓의 教育關聯 比較

(단위:%)

지 표	평 가 기 관	북한(평가연도)	남한(평가연도)
문자해독률 ¹⁾	World Almanac	99.0(1991)	96.0(1991)
	UNDP	90.0(1985)	94.7(1985)
취 학 륜 ²⁾	Eberstadt and Banister; 文敎部	97.9(1986)	97.3(1989)
의무교육기간(년)	統一院	11(1993)	6(1993)
학생비율 ³⁾	統一院	24.1(1990)	24.6(1990)
고등교육기관 등록자비율 ⁴⁾	Eberstadt and Banister; 文敎部	2.6(1987)	3.2(1989)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⁵⁾	Eberstadt and Banister; 文敎部	10.0(1987)	10.2(1985)
평균교육연수 ⁶⁾ (년)	UNDP	6.0(1980)	6.6(1980)
과학분야전공자 비율 ⁷⁾	UNDP	34(1987~88)	31(1987~88)

註 : 1) 15세이상 인구 중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인구의 비율.

2) 6~16세 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3) 전체인구 중 학생의 비율.

4) 전체인구 중 대학교 및 전문학교(교육대학 포함) 등록자의 비율.

5) 전체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 전체의 비율.

6) 25세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

7)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중 과학분야전공자의 비율.

資料 : World Almanac(1993); UNDP(1991); Eberstadt and Banister(1990); 文敎部(1990); 統一院(1991a, b).

고취가 33%, 김정일 찬양 및 세습합리화가 31%, 기타 혁명의식 및 對南·對美 비난과 관련된 단원이 21%라고 한다.¹⁸⁾

이상으로 볼 때 北韓教育은 그들의 정치 체제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全人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의 개발을 통한 人的資源開發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高級産業人力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따라서 단순히 교육과 관련한 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북한 노동력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예로 든 교육수준을 근거로 북한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통일 이전 舊東獨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指標上의 數値를 통해 볼 때 구동독

18) 金兌完(1991), p.297.

19) 許東燾(1992)은 “북한교육의 질적 수준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할 정도로 낮다”고까지 평가하면서 여러가지 실례를 들고 있다.

〈表 3〉 舊東西獨 勞動力의 水準 比較

(단위 : %)

지 표	구동독(평가연도)	구서독(평가연도)
숙련노동자 비율 ¹⁾	71.7(1988)	62.6(1987)
R&D 지출액 /GNP	2.8(1989)	2.7(1989)
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명)	16(1989)	16(1989)
노동인구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	21.2(1989)	18.8(1989)

註 : 1) 경제활동인구 중 기술교육이수자,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資料 : 高日東 · 曹東昊(1992), pp.134~135.

노동력의 질이 구서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表 3〉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구동독 노동력의 질이 구서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統一 이후 구동독 노동력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구동독 각 지역에 있는 聯邦勞動省 산하의 취업담당 자문관들은 구동독 노동자의 技術水準이 구서독 노동자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구서독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3주의 견습기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²⁰⁾ 초기에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기술수준이 높은 계층임을 감안하면 구동독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은 이들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 이전 구동독이 코메콘 국가들 중 가

장 經濟發展水準이 높고 노동자들의 질적수준도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밝혀진 실제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勞動力과 관련한 指標를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수준이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운영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作業規律

북한 勞動力의 質이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데 대한 또 하나의 근거로는 노동자들의 作業規律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다.²¹⁾ 즉 자본주의사회에서는 勤勞意慾이 物質的 誘因(material incentives)에 근거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물질적 유인이 없으면 스스로 일을 열심히

20) 高日東 · 曹東昊(1992), p.136.

21) 韓國經濟研究院(1993, p.74)은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규율이 훌륭”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하고자 하지 않는 반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의욕이 주로 道德的 誘因(moral incentives)과 強制的 誘因(coercive incentives)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물질적 보상이 없이도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북한에도 적용시켜 볼 때 북한 노동자들은 “주인답게”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勞動을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勞動에 의하여 건설된다”²²⁾라고 규정할 만큼 노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經濟發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요

인은 노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³⁾ 따라서 북한에서는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²⁴⁾이라 정의하면서 노동을 모든 주민의 의무²⁵⁾이자 권리²⁶⁾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²⁷⁾라고 규정하는 등 憲法과 勞動法 곳곳에 노동에 대한 誠實性을 강조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²⁸⁾

이러한 북한의 노동에 대한 정의가 勞動者들의 노동에 대한 認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되나, 북한의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이 ‘자력갱생원칙’하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資源을 동원하여 經濟成長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북한으로서는 資本과 技術이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사회의 유일한 指導理念인 ‘주체사상’에 따라 경제에서도 自立을 구현한다는 ‘자력갱생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가용노동력의 최대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위하여 女性 및 高齡人口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²⁹⁾ 각 노동자의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의 준수 및 生産量 達成與否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북한노동법 제18조는 勞動規律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하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 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하 ‘북한노동법’으로 표기) 제2조.

23)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추동력」, 『경제사전 1』, 1985, p.707.

24) 북한노동법 제2조.

25) 북한헌법 제83조 및 북한노동법 제4조.

26) 북한헌법 제70조 및 북한노동법 제5조.

27) 북한노동법 제24조.

28)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노동에 “주인다운 태도”(북한노동법 제6조 및 제17조)로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북한헌법 제29조 및 북한노동법 제1조)을 내어야 하고, 노동은 “즐거운 것”(북한헌법 제29조 및 북한노동법 제7조)이고 노동규율은 “자각적 규률”(북한노동법 제18조)이며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북한노동법 제14조).

29) 북한의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해서는 曹東昊(1992)를 참조.

탈할 수 없다”로 못박고 있다. 또한 同法 제32조에서는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동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며 로력낭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勞動力이 남을 때에도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임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북한노동법 제34조)고 규정함으로써 노동력의 最大利用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노동력의 최대이용을 效果的으로 管理·監督하기 위하여 표준공장을 만들어 여기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국가표준 로동정량’을 제정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소들이 ‘기업소 로동

정량’을 만들게 하고 있다.³⁰⁾ 각 기업소는 이를 기초로 각 개인별 ‘로동수첩’을 지급하여 여기에 일일계획량, 작업결과, 물자절약 관련자료 등을 기입하게 하고 매주 이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로동시간리용률’을 제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고 있다.³¹⁾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하여 超過達成을 明文化³²⁾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勞力動員을 실시하고 있으며,³³⁾ 계속적인 勞力競爭運動을 실시하고 있다(表 4 참조).

게다가 정해진 노동시간 이외에도 오전 작업전 30분간씩 독보회³⁴⁾를 실시하며,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지배인 및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루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작업총화가 끝난 후에는 職場別로 40분에서 2시간 정도 당 세포비서를 중심으로 학습이 있게 되어 있다.³⁵⁾ 또한 휴일에도 각종 회의·학습, 근로봉사,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勞動者들의 作業規律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목표된 생산량의 달성은 물론 초과달성을 이루어야 하며 각종 勞力競爭運動에 동원되는 상태에서 “주인답게” 그리고 “자원적으로” 노동에 임하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勤勞意慾을 상실하고 있으며 생산물의 質的 向上 등에는 무관심한 채 할당된 작업시간이나 생산량의 달성에만 신경을 쓰게 되기가

30)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로동정량」, 『경제사전 1』, 1985, pp.500~501.

31)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로동시간리용률」, 『경제사전 1』, 1985, p.495.

32)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북한노동법 제19조)하여야 하며, “말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북한노동법 제20조)하여야 한다.

33) 당·정·군·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 금요노동, 농촌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4~14주의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다. 統一院(1992a), p.295.

34) 독보시간에는 주로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다고 한다.

35) 統一院(1992a), pp.219~220. 실제로 1987년 월남한 김남철 씨의 부인인 최봉례 씨는 학습등으로 인하여 보통 밤 10시 이후에나 귀가하게 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朝鮮日報社(1991), pp.86~87.

〈表 4〉 北韓의 勞力競爭運動

구 호	발 기	동 기	비 고
천리마운동	1956. 12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집단적 혁신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전개된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1960. 2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현지지도시 강조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 및 생산성 향상 운동
속도전	1974. 2	당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의 공식구호로 채택	높은 속도와 질을 동시에 요구
숨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1979. 10	식물학연구소 근무 백설희 등 4명의 과학자들과 노력영웅 칭호 수상자들을 본받도록 하는 운동	자발적 노력을 강요하는 대중동원운동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1982. 7	김정일의 제의에 의해 경제개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금속부문(김책제철소)에서 발기	경제성장의 부진타개를 위한 계기조성 및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경제성으로 실증시키는 새로운 노력경쟁운동
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	1990. 1	80년대 속도창조운동에 이어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시	당조직과 일꾼들을 비롯 전주민 노력운동 분위기조성 및 청년학생들의 건인차 역할을 강조하여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공고성 도모

資料 : 統一院(1992a).

쉬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원산농업대학에서 1년 4개월간 강사를 한 재일동포 李佑泓 씨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상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사보타지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

들은 만사 무사안일주의에 철저하고 형벌 등에 따른 가혹한 통제를 면하는 방법으로 걸날림 수법을 쓸 수 있는 곳은 쓰며, 소극적인 사보타지로 높은 노르마(각 개인에게 할당된 노동기준량)에 대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⁶⁾ 그는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엄한 형벌에 처벌당하든가 식량배급을 끊긴다든가 하는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도 느릿느릿하고 얼빠진 사람들 같은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作業規律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³⁷⁾

36) 李佑泓(1990a), p.190.

37) 李佑泓(1990a), p.192. 그는 노동자들의 해이한 勞動意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실제 事例들을 보고하고 있다. 李佑泓(1990a) 이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규율에 대한 낮은 평가

또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노동원칙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몫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으로 여겨진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낮은 작업규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규율이 높음을 근거로 북한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작업규율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勞働生産性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들 중 가장 근본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북한의 勞働生産性에 기초한 것이다. 즉 북한 노동력의 질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노동생산성은 그다지 낮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賃金水準에 비교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노동력의 질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으로서 북한 노동력의 임금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양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는 許東燦(1992)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38)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45.

39) 許東燦(1992), p.135.

그러나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바가 없으며, 朝總聯系 기업의 투자경험으로부터 알려진 일부의 사례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례들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輕工業分野여서 이를 근거로 북한노동력의 일반적인 수준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알려진 사례들은 성공적인 사례들뿐이어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측의 적극적인 投資誘致努力에도 불구하고 1986년 후반까지는 조총련계 기업들이 對北進出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북한으로 진출한 조총련계 기업들도 몇몇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³⁸⁾ 失敗의 이유로 북한의 電力難, 社會間接資本의 미비, 通信·港灣 등에서의 問題點들이 지적되기도 하나, 북한 노동력의 낮은 質이 거론되기도 한다.³⁹⁾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勞働生産性은 어느 정도이며, 과연 賃金水準과 대비하여 볼 때 상당히 우수한 수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은 물론 곧 실현될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進出 결정 및 향후 南北韓 統一過程에서 북한지역 노동자의 임금결정이나 남북한 貨幣交換比率의 설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準據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北韓의 勞動生産性에 관한 論議를 章을 바꾸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frac{Y_t}{L_t} = AL_t^{\alpha-1}K_t^{1-\alpha} \dots\dots\dots(2)$$

Ⅲ. 勞動生産性的 推定模型과 資料

1. 推定模型

북한의 생산함수가 Cobb-Douglas 생산함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⁴⁰⁾ 생산요소는 勞動과 資本의 두가지로 가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쓰면,

$$Y_t = AL_t^{\alpha}K_t^{1-\alpha} \quad (0 < \alpha < 1) \dots\dots\dots(1)$$

로 표기할 수 있다. Y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A는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L은 투입된 노동의 양, 그리고 K는 투입된 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첨자 t는 t기를 의미한다. Cobb-Douglas 생산함수의 특성상 α 는 생산량의 노동에 대한 탄력성(output elasticity of labor)이 된다.

식 (1)의 양변을 L로 나누면,

를 얻게 된다. 왼쪽 변의 $\frac{Y_t}{L_t}$ 은 생산량을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나눈 것으로서 t기의 평균노동생산성으로 정의된다. 平均勞動生産性은 두 경제 사이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흔히 이용된다.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식 (1) 혹은 식 (2)를 추정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Y와 L의 자료로부터 평균노동생산성을 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평균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북한의 賃金水準에 비추어 본 북한의 노동생산성의 수준을 살피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식 (2)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適正賃金이 限界勞動生産性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때,⁴¹⁾ 북한의 한계노동생산성을 구하여 보면 현재 북한이 外國企業의 투자시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한계노동생산성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생산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식 (1)을 L에 대하여 미분하면,

$$\frac{\partial Y_t}{\partial L_t} = \alpha AL_t^{\alpha-1}K_t^{1-\alpha} = \alpha \cdot \frac{Y_t}{L_t} \dots\dots\dots(3)$$

을 얻게 된다. 식 (3)으로부터 t기의 한계노동생산성은 생산량의 노동에 대한 탄력성과

40)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산함수추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Cobb-Douglas 생산함수 혹은 고정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편리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기로 한다.

41) 이에 대해서는 第V章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평균노동생산성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계노동생산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α 값의 추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 (2)를 추정하여 α 추정치를 구하고자 한다. 추정을 위하여 식 (2)를 로그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ln\left(\frac{Y_t}{L_t}\right) = \ln A + (\alpha - 1) \ln L_t + (1 - \alpha) \ln K_t \dots\dots\dots (4)$$

식 (4)의 오른쪽 변의 노동과 자본의 계수들은 평균노동생산성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탄력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노동의 양이 1% 변화할 때 평균노동생산성은 $(\alpha - 1)\%$ 변화하게 된다. 추정은 1965년에서 1990년까지의 26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⁴²⁾ 식 (4)의 추정 결과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장에서는 추정에 이용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資 料

가. 生産量

생산량의 자료로는 1965년 이후의 북한 GNP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1965년부터 북한의 GNP를 매년 추정한 자료로는 統一院(1990)과 統一院(1991a)이 있는데, 두 추정치를 비교하면 1979년 이후는 같으

42) 북한의 노동에 관한 자료는 1965년 이후부터 입수 가능하기 때문이다.

43) 이들 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돌출치(outlier)는 제외하였다.

나 1978년까지는 統一院(1990)이 조금 크게 추정되어 있다.

두 자료 중 보다 信賴性이 높은 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 자료의 추정치가 다른 1978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추정치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北韓研究所(1983)의 추정치와 實物指標接近法을 이용한 韓國開發研究院(1991)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추정치가 統一院(1991a)의 추정치와 비슷하였으므로 統一院(1991a)에 나타난 북한의 GNP 자료를 추정을 위한 生産量의 指標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統一院(1991a)의 GNP 추정치는 經常 美달러貨로 추정되어 있으므로 각 연도의 북한의 貿易換率을 이용하여 북한 원화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그 다음 이를 실질GNP로 환산하기 위한 디플레이터(deflator)로는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1982, 1991)에 나타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구동독, 루마니아, 구소련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의 平均值를 사용하였다.⁴³⁾

나. 勞 動

실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은 투입된 總勞動時間數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북한의 경우 실제노동시간수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就業者의 數를 투입노동량의 지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취업자의 수도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統

一院(1991a)에서는 1965년에서 1989년까지의 북한의 經濟活動人口⁴⁴⁾數를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체제의 특성상 失業者란 없으므로⁴⁵⁾ 경제활동인구수를 바로 취업자수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1990년의 경제활동인구수는 統一院(1992b)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⁶⁾ 그런데 1986년부터는 統一院(1991a)과 統一院(1992b)의 경제활동인구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1985년까지는 統一院(1991a)의 경제활동인구수를,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統一院(1992b)의 경제활동인구수를 投入勞動量의 指標로 사용하였다.

물론 투입노동량을 취업자수로 파악하는 경우 실제 노동투입량을 과장할 우려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제 勞動時間에 대한 조사들에 의하면 상당량의 시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약 10~30%, 구소련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약 30%, 폴란드 제조업의 경우는 약 8~10%, 폴란드 서비스업의 경우는 약 20~30%의 노동시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⁴⁷⁾ 구동독의 경우 통일 직전인 1990년 5월 구서독의 Ifo 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僞裝失業이 구동독 산업의 약 18%, 경제 전체로는 약 15%에 이른다고 추정된 바 있으며,⁴⁸⁾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40% 정도의 노동시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되기도 하였다.⁴⁹⁾ 중국의 경우에도 약 20~30%의 노동력이 불필요한 노동력이라고 한다.⁵⁰⁾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의 상당부분이 불완전 취업(underemployed)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¹⁾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수를 투입노동량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다. 資 本

북한의 資本量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북한의 자본량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선 t 기의 자본량은,

$$K_t = I_t + (1 - \lambda)K_{t-1} \dots \dots \dots (5)$$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K 는 자본량, I 는 투자액, 그리고 λ 는 감가상각률을

44) 만 15세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한다.
 45)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노동이 모든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노동에 참여하여야 하고(북한노동법 제4조), 국가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북한노동법 제5조). 그 결과 북한에서는 失業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북한노동법 제5조는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6) 統一院(1992b)에서는 1984년에서 1991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수를 추정하고 있다.
 47) Adam(1984), p.36.
 48) Vodopivec(1991), p.19.
 49) Rusek(1989), p.303.
 50) Jefferson and Rawski(1991), p.7.
 51) 한편 노력경쟁운동, 노동시간 외의 노동 등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동에 추가적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불완전취업의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다.

나타낸다.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t 기의 자본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t 기의 投資額 規模를 알아야 한다.

북한은 豫算支出을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비), 국방에 대한 지출(국방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관리비)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인민경제비는 다시 기본건설투자자금, 유동자금, 가격보조금, 공업·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기본건설투자는 고정재산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건 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⁵²⁾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投資와 비슷한 개념의 것으로 파악되므로 기본건설투자액을 북한의 투자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의 기본건설투자액에 관한 자료는 統一院(1974), 統一院(1986), 極東問題研究所(1980)에서 일부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統一院(1974)은 1961년에서 1965년까지의 기본건설투자액을, 統一院(1986)에서는 1953년에서 1965년까지의 기본건설투자액을, 그리고 極東問題研究所(19

80)는 1971년에서 1976년까지 기본건설투자액에 관한 통계를 싣고 있다. 統一院(1986)의 통계는 統一院(1974)의 통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에서 1965년, 그리고 1971년에서 1976년까지의 12년간의 기본건설투자액을 가지고 기타年度の 기본건설투자액을 추정한 후,⁵³⁾ 이를 投資의 指標로 사용하였다. t 기의 기본건설투자는 t 기의 GNP와 $t-1$ 기의 投資의 函數로 가정하였으며,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기록되어 있다.

$$I_t = -4.314 + 0.140 Y_t + 0.775 I_{t-1}$$

(2.683) (0.058) (0.189)

$$R^2 = 0.98$$

그리고 減價償却率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경우에 가정되는 0.05를 가정하였다. 평균적으로 보아 남한의 설비가 더 복잡하고 첨단적인 것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우 減價償却率이 남한보다 작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의 生産函數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우에도 0.05의 감가상각률을 가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⁴⁾

한편 식 (5)에 의하여 각 연도의 資本量을 구하기 위해서는 1964년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1964년의 자본량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1954년의 북한의 자본-생산량비율(capital-output ratio)이 남한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1954년 남한의 자본-생산량비율

52)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기본건설투자」, 『경제사건 1』, 1985, pp.279~280.

53) 추정대상연도를 1960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1960년 이전의 GNP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4) 예를 들어 폴란드의 생산함수를 연구한 Terrell(1992)은 0.05를, 소련의 경우를 연구한 Bergson(1979)은 0.042를 가정하고 있다.

은 Pyo(1992)의 4.59를 사용하였다. 1954년의 북한의 GNP는 10억 북한원으로 가정하였다.⁵⁵⁾ 이 수치들을 이용하면 1954년 북한의 자본량은 經常價格으로 45.9억 북한원이 되며, 앞에서 설명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1985년 不變價格으로 환산하면 57.7억 북한원이 된다. 이 1954년의 자본량 추정치를 사용하여 식 (5)에 의하여 1965년 이후의 자본량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자본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생산량, 노동, 자본 등의 자료는 <附表>에 정리되어 있다

IV. 北韓의 勞動生産性

1. 推定結果

第Ⅲ章의 식 (4)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설명변수 자본량과 오차항간의 동시상관(simultaneity)이 존재하므로 단순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할 경우 추정계수의 一貫性(consistency)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사용하여 식 (4)를

55) 1954년의 북한의 GNP를 추정한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비슷한 연도의 것으로는 황의각(1992)의 1953년과 1956년의 추정치가 있을 뿐이다. 그는 북한의 GNP를 1953년은 8.6억 북한원, 1956년은 16.1억 북한원으로 추정하였다.

추정하였으며, 자본량에 대한 代變數(instrumental variable)로는 前期의 자본량과 발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차항이 異分散性(heteroscedasticity) 혹은 自己相關(autocorrelation)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推定係數의 標準誤差는 Hansen(1982)과 White(1980)의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오차항의 시계열상관이나 이분산성에 대한 정확한 사전정보가 없이도 일관성 있는 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에는 표준오차가 기록되어 있다.

$$\ln\left(\frac{Y_t}{L_t}\right) = -1.985 - 0.563 \ln L_t + 0.563 \ln K_t$$

(0.075) (0.028) (0.028)

$$R^2 = 0.95$$

이 推定結果를 이용하여 원래의 Cobb-Douglas 함수식 (1)을 다시 쓰면,

$$Y_t = 0.137 L_t^{0.437} K_t^{0.563} \dots\dots\dots (6)$$

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obb-Douglas 생산함수의 특성상 노동의 승수는 생산량의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 되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위의 推定結果는 勞動이 1% 증가하면 生産量이 0.437% 증가함을 보여준다.

한편 <表 5>에서는 남한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α 推定値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고는 있으나, 技術進步의 명시적 고려, 분석대상분야, 분석기간, 추정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추정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表 5〉 α 推定値の比較

대상 국가	추정자	추정치
남한	朴佑奎(1989)	0.401
	白雄基(1992)	0.617
소련	Bergson(1979)	0.58
	Weitzman(1985)	0.59
	Whitesell(1985)	0.39
체코슬로바키아	Rusek(1989)	0.364
	Brada(1989)	0.259
유고슬라비아	Whitesell(1985)	0.692
	Whitesell(1985)	0.328
구동독	Brada(1989)	0.833
	Whitesell(1985)	0.561
	Brada(1989)	0.698
폴란드	Whitesell(1985)	0.561
	Brada(1989)	0.698
중국	Kuan, et al.(1988)	0.582

2. 勞働生産性

〈附表〉에 수록한 生産量과 勞働의 자료를 이용하면 북한의 연도별 평균노동생산성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表 6〉에 정리되어 있다.

〈表 6〉을 보면 북한의 平均勞働生産性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增加勢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평균노동생산성의 증가가 거의 停滯狀態에 빠져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6〉의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의 增加

推移를 북한의 經濟計劃期間別로 나누어 再構成한 것이 〈表 7〉이다. 〈表 7〉에서는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의 연평균증가율이 1970년대 중반까지의 6개년계획 이후로는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6개년계획기간까지는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경제계획의 목표치도 상당부분 달성하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의 제2차 7개년계획 이후로는 침체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는 일반적인 관측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는 동기간중 남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과도 크게 대조된다.

그리고 1990년 이래 북한의 經濟成長率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제3차 7개년계획의 主要指標가 계획에 미달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⁵⁶⁾하였음

56) 1993년 12월 8일 북한노동당중앙위 제6기 제 21회 전원회의에서 북한 강성찬 총리의 보고 내용. 『東亞日報』, 1993. 12. 10.

〈表 6〉 北韓의 平均勞動生産性的 推移(前年對比 增加率)

(단위 : 1985년 불변가격 북한원, %)

평균노동생산성		평균노동생산성	
1965	1,326.2	1978	3,256.1 (1.0)
1966	1,346.1 (1.5)	1979	3,496.0 (7.4)
1967	1,492.5 (10.9)	1980	3,484.7 (-0.3)
1968	1,564.2 (4.8)	1981	3,459.7 (-0.7)
1969	1,568.2 (0.3)	1982	3,917.5 (13.2)
1970	1,861.2 (18.7)	1983	4,097.6 (4.6)
1971	1,976.0 (6.2)	1984	4,095.8 (-0.0)
1972	2,308.9 (16.8)	1985	4,400.2 (7.4)
1973	2,558.0 (10.8)	1986	4,419.2 (0.4)
1974	2,743.6 (7.3)	1987	4,603.9 (4.2)
1975	2,516.9 (-8.3)	1988	4,755.8 (3.3)
1976	3,005.8 (19.4)	1989	4,820.3 (1.4)
1977	3,224.7 (7.3)	1990	4,869.5 (1.0)

〈表 7〉 經濟計劃期間別 北韓의 平均勞動生産性的 年平均增加率

경제계획기간	연평균증가율	
	북한	남한 ⁵⁾
제1차 7개년계획(1961~70)	7.22 ¹⁾	
6개년계획(1971~76)	8.50 ²⁾	4.80
제2차 7개년계획(1978~84)	3.66 ³⁾	5.30
제3차 7개년계획(1987~93)	2.46 ⁴⁾	6.27

註 : 1) 1965~7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 완충기인 1977년 포함.

3) 완충기인 1985~86년 포함.

4) 1987~9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5) 북한과의 비교를 위해 韓國開發研究院의 1985년 불변가격 GNP 자료와 統計廳(1992)의 취업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을 감안하면 1990년 이후 북한의 平均勞動生産性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換率適用 등의 문제로 남한과 북한의 平均노동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經

常價格으로 1990년 북한 취업자의 1인당 平均노동생산성은 2,393.3달러이고 남한의 平均노동생산성은 13,428.7달러이므로 북한의 平均노동생산성은 남한의 약 1/5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8〉 北韓의 限界勞動生産性的 推移

(단위 : 1985년 불변가격 북한원)

한계노동생산성		한계노동생산성	
1965	579.9	1978	1,423.7
1966	588.5	1979	1,528.6
1967	652.6	1980	1,523.7
1968	683.9	1981	1,512.7
1969	685.8	1982	1,712.9
1970	813.8	1983	1,791.6
1971	864.0	1984	1,790.8
1972	1,009.5	1985	1,923.9
1973	1,118.4	1986	1,932.2
1974	1,199.6	1987	2,013.0
1975	1,100.5	1988	2,079.4
1976	1,314.2	1989	2,107.6
1977	1,410.0	1990	2,129.1

第Ⅲ章의 식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평균노동생산성에 生産量の 勞動에 대한 彈力性을 곱하여 주면 限界勞動生産性的 값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생산량의 노동에 대한 탄력성이 일정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앞절에서 구한 α 추정치와 평균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북한의 한계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 〈表 8〉이다.

V. 北韓 勞動力의 適正賃金

1. 適正賃金の 定義

適正賃金⁵⁷⁾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통

일된 정의가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勞動生産性 혹은 支拂能力에 기초한 임금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의 生計水準 혹은 最低文化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賃金水準을 적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勞動의 需要와 供給을 일치시키는 임금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勞使間의 세력에 기초한 협상의 결과로 결정된 임금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임금에 대한 견해와 시각에 따라 적정임금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북한경제내에서의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

57) 적정임금은 적정임금수준, 적정임금격차, 적정임금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을 포함한 外國投資企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노동력의 ‘양질’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시하는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비추어 볼 때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생산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는 예상은 그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질’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외국의 투자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의 適正性 與否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賃金決定理論⁵⁸⁾ 중 限界生産力說(marginal productivity theory)에 기초하여 북한의 적정임금수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계생산력설은 임금기금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의 임금결정이론이 勞動의 供給側面을 중시한 데 반해, 勞動의 需要側面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에 의하여 주장된 이

론이다.

본래 限界生産力說은 임금수준이 주어진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雇傭理論 혹은 企業의 勞動需要理論이지 임금결정이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利潤極大化 原則에 의거하여 행동을 한다면 균형점에서는 결국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계생산력설을 임금결정이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限界生産力說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適正賃金을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임금수준이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보다 높으면 과도한 것으로, 낮으면 과소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이 北韓勞動力的 限界生産보다 높다면 북한의 임금수준은 적절한 것이 아니게 되며, 노동생산성에 기초하여 북한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하는 주장도 그 根據를 잃게 된다.

2. 北韓의 適正賃金

먼저 북한이 外國投資企業에게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북한이 公式的으로 발표한 賃金水準도 자료에 따라 다르며, 현재 북한에서 操業中인 조총련계 기업들에서 지급하는 임금

하나 여기에서는 적정임금수준을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58) 한계생산력설 이외의 대표적인 임금결정이론으로는 正價學說(just price theory), 임금생존비설(subsistence theory), 임금기금설(wage fund theory), 노동가치설(labor value theory), 단체교섭설(collective bargaining theory), 최근의 효율임금설(efficiency wage theory)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金秀坤(1978), 裴茂基(1984) 등을 참조.

수준도 기업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임금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금은 교섭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⁵⁹⁾ 실제 대북투자사의 賃金支給水準은 북한의 요구수준과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의 결과 임금수준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에서는 教育·醫療·住宅 등이 無償으로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費用負擔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⁰⁾

현재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을 정리한 <表 9>에 의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월평균 임금은 최저 75달

러에서 최고 4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저치인 75달러는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1992)에서만 제시되어 있고 다른 자료들은 모두 최저치가 150달러 이상임을 고려하면 75달러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단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거나 대외선전용으로 여겨진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북한에서 조업 중인 합영기업들이 지불하고 있는 150달러 수준이 일반적으로 非熟練 일반노동자에 대하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이라고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⁶¹⁾ 오히려 외국의 투자기업이 노동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1년에 10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⁶²⁾ 둘째 賃金の 7%를 社會保險料로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⁶³⁾ 셋째로, 북한이 UNIDO에 제출한 投資誘致希望事業內譯을 보면 準熟練工 이외에도 관리자, 사무원, 기술감독, 숙련공 등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약 350달러에서 400달러 수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⁶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월평균 150달러를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임금수준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表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북한 노동력의 한계생산은 1985년 不變價格으로 약 2,130북한원이다. 이를 經常價格으로 표시하면 약 2,240북한원이며, 미국달러로 환

59)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의 남포공단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수준을 제시해 놓은 후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1992), p.8.

60) 중국의 경우를 예로 보면, 중국 심양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모 의류업체의 경우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여 새로운 공안수요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안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부받았다고 한다. 『京鄉新聞』, 1993. 5. 12.

61) 全洪澤(1993)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全洪澤(1993), p.21.

62)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66.

63)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1992), p.8.

64) 예를 들어 UNIDO Project No. 10인 평양실크웨어 및 양말공장은 준숙련공 150명 이외에도 관리자 10명, 사무원 2명, 기술감독 15명, 숙련공 100명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Project No. 11의 평양섬유신발공장의 경우에도 관리자 10명, 사무원 3명, 기술감독 15명, 숙련공 150명, 준숙련공 150명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表 9〉 北韓의 外國企業에 대한 月賃金水準

자 료	월임금수준 ¹⁾	
	북 한 원	미국 달러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1992)	160~400원	75~187달러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1993) ²⁾	500~800원	234~374달러
UNIDO(1990)	—	150~400달러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³⁾	—	150달러
북한방문자 ⁴⁾	—	200달러

- 註 : 1) 북한원으로 발표된 임금수준은 북한원화의 1990년 對美換率 2.14를 적용하여 미국달러화로 환산.
 2)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2.5북한원, 기술자의 경우 시간당 4.0북한원을 하루 8시간, 월 25일 노동을 가정.
 3) 평양 피아노합작공장, 만경대 신발합영회사 등의 경우.
 4)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북한이 제시한 임금수준.

산하면 약 1,046달러이다. 즉 평균적인 북한 노동력의 月平均 限界生産은 약 87달러가 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월평균임금 150달러는 북한 노동력의 한계생산의 약 2배에 가까운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기초하여 북한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限界生産보다 높은 수준의 賃金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誘因을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한계생산에 비해 높은 임금이라는 유인이 결과할 생산성의 향상까지를 고려하면 150달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合營企業의

경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해야 하므로 임금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기관에 先拂로 일괄 납부하고 해당 노동기관이 다시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노동기관은 國家 納付金額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노동자의 實受額은 약 45~90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⁵⁾ 그런데 북한의 국내기업의 경우 經歷, 職種 등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 輕勞動者는 약 40달러, 광부·제철공업종사자 등 重勞動者는 약 60달러, 責任者級 技術者는 약 70~90달러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합영기업 노동자의 실제수령액은 국내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큰 차이가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賃金誘因에 의한 생산성의 뚜렷한 향상을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란 곤란할 것이다.

65)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66.

VI. 結 言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이 “양질의 저렴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대하여, 특히 ‘양질’이라는 예상에 대하여 그 妥當性を 教育水準, 作業規律, 勞動生産性的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가장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勞動生産性에 근거한 예상도 實證分析의 결과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경우 限界勞動生産에 의거한 평균적 북한 노동력의 適正賃金水準은 약 87달러인 반면, 북한이 외국의 투자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은 약 150달러이므로 임금수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력의 質 자체는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금수준에 비교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노동력의 質은 우수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勞動力의 質을 규정하는 요인이 위의 세가지만은 아니다. 이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훈련, 노동자의 건강, 노동자의 적성에 맞는 직종선택 등도 노동력의 질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 노동력의 질은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자에 대한 훈련에 있어서는 落後된 機械設備와 尖端技術知識을 갖춘 專門教育人力의 부족으로 일부 單純技能分野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합영법시행세칙(1992년 10월 16일 제정) 제 69조는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技術水準이 낮고 技能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으며, 再教育의 側面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 교육에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사쿠라기업의 북한투자합영기업인 亞商은 국영기업 등에서 경험이 있는 熟練工보다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20세 미만의 종업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未經験者들의 新技術 吸收力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⁶⁾

勞働者の 健康側面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교할 때 떨어지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우리나라의 다다기업의 경우 현지

66)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p.162~163.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로 인한 生産性的의 低下 및 조금만 힘이 들어도 작업을 기피하거나 이직하는 성향으로 큰 隘路를 겪고 있다고 한다.⁶⁷⁾ 이처럼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勞動力의 質 및 勞動生産性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平均壽命,⁶⁸⁾ 成人의 1일 열량섭취정도,⁶⁹⁾ 방문자의 이야기⁷⁰⁾ 등으로 볼 때 북한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노동자가 자신의 適性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職種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職業選擇과 자유로운 職場移動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이 勞働者의 意思보다는 黨과 政府의 調整·統制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직장배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成分과 黨性이라고 한다. 또한 직장의 자의적 이동은 물론 거주이전조차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⁷¹⁾ 이러한 통제는 勞動力의 效率的 配分을 저해하게 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북한은 經濟難, 낮은 國際信用度 등으로 최신자본설비의 도입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대부분의 資本設備가 노후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영층이 대부분 경영능력을 결여한 黨幹部陣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효율적 관리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²⁾

물론 북한 노동력의 질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입수가 가능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實證分析 또한 模型의 적합성, 統計資料의 불충분 및 資料의 현실부합성 등의 한계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노동력이란 북한의 전체적인 노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였을 때 이용하게 될 노동력과는 차이가 있을

67) 1992년 11월 23일 필자와 면담한 인도네시아 다다기업의 박성배 사장의 이야기이다.

68) 1990년 남한의 경우 남자는 67.4세, 여자는 75.4세인 반면, 북한은 남자 61.8세, 여자는 66.8세이다(統一院, 1990b).

69) 남한은 성인의 1일 섭취열량이 2,870kcal인 반면 북한은 이의 2/3 수준인 1,915kcal로 추정된다(韓國開發研究院, 1991).

70) 초·중급학교에 철봉을 설치하여 이에 매달려 키를 키우는 「학생의 키를 키우는 운동」이 80년대에 전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키와 체격이 작고, 여자의 초경이 18~20세 정도라 한다(李佑泓(1990b), pp.19~22).

71) 그 결과 북한에서의 거주이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7년의 경우 북한의 거주이전자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5.9%에 불과한 반면, 남한은 22.6%에 이른다(Eberstadt and Banister(1990), p.49).

72) 구동독의 경우 서방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경영진의 약 10% 정도만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umpel(1991), p.7). 또한 북한에서 합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방겔러리의 경우 지배인(공장장)을 공장근무자 중에서 임명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북한측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공산당 경공업부에서 직접 관할하였다고 한다(대한무역진흥공사(1993), p.163).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으므로 북한의 전체적인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실제 우리 기업이 이용하게 될 노동력의 노동생산성을 저평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고용정책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노동력이 불완전취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노동투입시간 대신 노동자의 수를 투입노동량으로 상정한 것 또한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북한의 부문별 고용이나 투입노동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북한의 노동자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노동자들을 새롭게 교육시키고, 최신설비 및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勞動力의 質과 生産性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初期段階의 對北投資는 단순기능업종에 집중될 것이므로 노동력의 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업종의 성격상 단기간내에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 체제상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生産性 向上을 위한 賞與金支給 등은 북한당국이 인정을 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남한 혹은 해외에서의 연수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고용기관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관리층의 일부는 북한당국이 추천하는 북한측 인물을 채용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경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投資라는 것이 交易처럼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固定費用을 필요로 하며, 전체규모 또한 交역에 비해 매우 큰 것이어서 초기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對北投資의 成功與否는 남북경제관계 발전은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철저한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북투자가 북한의 勞動力의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노동력의 수준이 대북투자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우리 기업들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희망적 예측’에 근거하여 대북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온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現實的 限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향후 대북투자결정에 하나의 準據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基本目的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북한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의 측면에서도 150달러 수준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상대국에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저렴’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結果가 우리 기업이 실제 고용하게 될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라고 해도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사업 결정이나 政府의 對北經濟政策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기업이나 政府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판단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최소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기업이 효율적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 參 考 文 獻 ◁

高日東·曹東昊,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9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80.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研究叢書 19, 韓國開發研究院, 1978.
 金兌完, 「教育部門에서의 南北韓 交流協力 및 統合方案」,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部門別 課題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35, 1993.
 大韓商工會議所, 『南北韓 合作投資의 推進 方案』, 1992.
 文教部, 『文教統計年鑑』, 1990.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1992.
 朴佑奎, 「潛在GNP 및 通貨에 의한 物價上昇壓力의 推定」, 『韓國開發研究』, 第11卷 第2號, 1989.
 裒茂基, 『勞動經濟學』, 經文社, 1984.
 白雄基, 「法定公休日 短縮에 따른 製造業 人力難解消 및 生産增大效果」, 『KDI 分期別 經濟展望』, 第11卷 第1號, 1992.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198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남포경

- 공업기지와 관련한 자료』, 1992.
- 李佑泓, 『어둠의 共和國』, 統一日報社, 1990a.
- , 『가난의 共和國』, 統一日報社, 1990b.
- 全洪澤, 「北韓의 投資環境과 對北投資戰略」,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3.
- 曹東昊, 「舊東獨地域 失業의 構造의 原因과 北韓의 潛在失業에 관한 研究」, 未發表論文, 1992.
- 朝鮮日報社, 『北韓, 그 충격의 실상』, 1991.
-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1992.
- 統一院, 『北韓經濟의 推移와 工業 및 農業 研究』, 국통조 74-119, 1974.
- , 『北韓經濟統計集』, 1986.
- , 『分斷 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 1990.
- , 『북한경제자료집』, 1991a.
- , 『南北韓 社會·文化指標』, 1991b.
- , 『북한개요 1992』, 1992a.
- , 『남북한 경제지표』, 1992b.
- ,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호, 1993a.
- , 「對北 投資環境에 관한 企業人 意識調查結果」, 1993b.
- , 『주간 북한동향』, 1993c.
-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1991.
- 韓國經濟研究院, 『對北韓 企業進出戰略의 摸索』, 研究叢書 94-93-02, 1993.
-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物資交易現況과 交易增進對策』, 진흥 91-23, 1991.
- 許東燾, 「北韓經濟의 實態」, 『北韓研究』, 1992 봄호, 北韓研究所.
-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2.
- Adam, Jan, *Employment and Wage Policies in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since 1950*, St. Martin's Press, 1984.
- Bergson, Abram, "Notes on the Production Function in Soviet Postwar Industrial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 1979, pp.116~126.
- Brada, Josef C., "Technological Progress and Factor Utilization in Eastern European Economic Growth," *Economica*, 56, 1989, pp.433~448.
- Eberstadt and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U. S. Bureau of Census, Washington, 1990.
- Hansen, L. P., "Large Sample Properties of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s," *Econometrica*, 50, 1982, pp.1029~1054.
- Jefferson, Gary H. and Thomas G. Rawski,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in China's Cities," University of Pittsburgh Working Paper 271, 1991.

- Kuan, C., W. Hongchang, Z. Yuxin, G. H. Jefferson, and T. G. Rawski, "Productivity Change in Chinese Industry: 1953-19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2, 1988, pp. 570~591.
- Pyo, Hak K.,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90," KDI Working Paper No. 921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2.
- Rusek, Antonin, "Industrial Growth in Czechoslovakia 1971-1985: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Capital-Labor Substitu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1989, pp. 301~313.
- Terrell, Katherine, "Productivity of Western and Domestic Capital in Polish Indust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6, 1992, pp. 494~514.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1*, 1991.
- UNIDO, *List of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 1990.
-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Comecon Data 1981*, Greenwood Press, 1982.
- , *Comecon Data 1990*, Greenwood Press, 1991.
- Vodopivec, Milan, "The Labor Market and the Transition of Socialist Economics," WPS 561, World Bank, 1991.
- Weitzman, Martin L., "Technology Transfer to the USSR: An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 1979, pp.167~177.
- White, H.,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48, 1980, pp.817~838.
- Whitesell, Robert S., "The Influence of Central Planning on the Economic Slowdown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 Comparative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Economica*, 52, 1985, pp.235~244.
- World Almanac,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4*, 1993.

〈附表〉 北韓의 GNP, 勞動, 資本, 換率, 發電量

	GNP		노 동	자 본	환 율	발전량
	억US \$ ¹⁾	억 북한원 ^{1) 2)}	천 명	억 북한원 ^{1) 2)}	북한원 / US \$	억 kwh
1965	19	57.2	4,316	94.1	2.57	132
1966	20	59.8	4,445	101.0	2.57	125
1967	23	68.3	4,578	110.1	2.57	122
1968	25	73.8	4,715	121.6	2.57	126
1969	26	76.2	4,856	135.0	2.57	129
1970	32	93.1	5,002	152.0	2.57	145
1971	35	101.8	5,152	167.4	2.57	149
1972	42	122.5	5,307	186.0	2.57	156
1973	52	139.8	5,466	211.1	2.37	168
1974	59	158.2	5,766	241.4	2.37	174
1975	65	150.4	5,974	282.1	2.05	188
1976	77	186.0	6,189	331.2	2.15	191
1977	86	206.7	6,411	388.1	2.15	194
1978	105	216.1	6,636	451.5	1.86	210
1979	124	239.9	6,861	522.2	1.79	210
1980	135	244.1	7,005	598.2	1.70	210
1981	136	253.8	7,336	678.5	1.77	211
1982	136	296.7	7,578	767.1	2.14	218
1983	145	320.5	7,821	864.1	2.18	236
1984	148	330.6	8,072	967.7	2.21	245
1985	151	366.9	8,339	1,079.9	2.43	253
1986	174	383.5	8,678	1,199.6	2.23	253
1987	194	408.3	8,868	1,326.9	2.14	261
1988	206	433.8	9,122	1,461.9	2.15	279
1989	211	452.3	9,383	1,603.6	2.23	292
1990	231	470.0	9,652	1,751.2	2.14	277

註 : 1) 경상가격.

2) 1985년도 불변가격.